

# 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시행: 2020.3.1.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2조(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입학,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위과정)

- ① 본 대학원에는 전문법학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법학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박사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운영방침)

본 대학원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및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법률 전문가 양성을 그 목적으로 운영한다.

### 제4조(영문표기)

본 대학원의 명칭 및 학위과정의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다.

1.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정식영문표기), Kyung Hee Law School(KHLS)(약식영문표기)
2. 석사과정졸업학위 : Juris Doctor(J. D.)
3. 박사과정학술학위 : Doctor of Philosophy in Law(Ph. D.)

## 제2장 교육목표

### 제5조(교육이념)

본 대학원의 교육이념은 전인적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바탕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국제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 제6조(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국제적 감각과 도전정신을 겸비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협동하고 봉사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7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인적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바탕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명감과 인생관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 제8조(특성화 목표)

본 대학원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여, 국제화시대의 기업경영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글로벌 기업법무 전문가 양성을 특성화 목표로 한다.

### 제3장 조직, 직제 및 부속기관

#### 제9조(조직)

- ① 본 대학원의 조직은 대학원장, 교무부대학원장, 학생부대학원장, 학생지도센터장, 리걸클리닉센터장, 석사과정 주임교수, 박사과정 주임교수, 행정실 및 기타 부속기관으로 구성된다.
- ②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 ③ 본 대학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교수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

- ① 본 대학원의 학사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1. 입학전형위원회
  - 2.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3.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4. 학사운영위원회
  - 5. 학생지도위원회
  - 6. 장학위원회
  - 7. 자체평가위원회
  - 8. 발전기획위원회
  - 9. Search & Recruit Committee
  - 10. 인사위원회
  - 11. 진로 및 취업지도위원회
  - 12. 학생상벌위원회
  - 13. 변호사시험지도위원회
  - 14. 법학도서관 운영위원회
  - 15. 국제화위원회
  - 16. 규정심의위원회
  - 17. 실습지도위원회
  - 18. 종합시험위원회
  - 19. 우수강의교원선정위원회
  - 20. 실무교육위원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부속기관)

- ①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 1. 경희법학연구소
  - 2. 법학도서관
  - 3. 학생지도센터
  - 4. 국제교류센터
  - 5. 리걸클리닉

6. 세진원(기숙사)

② 경희법학연구소에는 글로벌 기업법무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의 전문법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의 종류와 구분

제12조(분류 및 학위의 표기방법)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는 전문학위를 수여하며, 박사학위는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제5장 입학 및 등록

제1절 입학

제13조(입학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일로 한다.

제14조(입학시험지원 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제15조(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지원서를 비롯하여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입학전형방법)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정시전형에 의한다.
- ②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 ③ 본 대학원은 모든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영어시험성적,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부의 전 학년 성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각 전형별 선발인원, 선발시기, 전형요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본 내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⑤ 본 대학원은 모든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사회활동경력, 봉사활동실적,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⑥ 본 대학원의 모든 입학전형에서는 어떤 전형요소를 통해서도 지원자의 법학지식의 정도를 시험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

제17조(일반전형)

- ① 일반전형은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기 그 전형요소와 전형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일반전형에서는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수의 예비합격자수를 발표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전형)

- ① 특별전형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 출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각 인적 집단에 배정되는 선발인원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③ 특별전형에서의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9조(학생의 다양성)

- ①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에서 경희대학교 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입학정원의 35%이상 선발한다.
- ②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에서 비(非)법학사를 입학정원의 35%이상 선발한다.

제20조(합격자의 결정)

- ① 각 전형별로 지원자가 각 전형요소에서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그 총점의 순위에 따라 각 전형에 배정된 인원을 선발한다.
- ② 입학사정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1조(전형방법 및 전형기준의 공시)

본 대학원장은 확정된 본 대학원의 전형방법 및 전형기준을 입학원서 접수 3개월 전에 본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입학전형의 관리)

- ①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전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기능·권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②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기능·권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편입학)

- ① 총장은 본 대학원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의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②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원의 편입학전형의 방법, 전형요소 및 각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절 등록

제24조(등록금 납부)

-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추가등록)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 연기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제42조에 따라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27조(휴학 및 등록금)

- ① 휴학하는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마치고 매 학기 학기개시일 21일 이내에 휴학하거나,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6장 교과과정 및 수업

### 제1절 교과과정

제28조(교과과정 등과 관련한 본 대학원의 특례 등)

- ①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변경,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본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과목을 필수로 하며 그 외 교과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정하되, 이를 위해 별도의 「법학전문대학원교과과정에관한지침」을 둔다.
- ③ 본 대학원의 모든 강좌는 학기 단위로 개설한다.
- ④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한다.
- ⑤ 본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실무기초과목과 기본법학과목을 포함하여 96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⑥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교과과정과 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교과과정에관한지침」 및 「법학전문대학원학사운영에관한지침」에 의한다.

제29조(교수의 책임시간과 강의시간)

- ①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1학년도 간 책임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1학년도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외부출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외부강의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12시간 이내이면 본 대학원장의 허가 하에 외부출강을 할 수 있다.

제30조(유급조교에 관한 규정)

교수의 강의와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교수에게 유급조교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 제2절 수업

제31조(수업연한)

-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으로 한다.
- ②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본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소정기간 동안 계절학기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의한 계절학기의 수업시수는 정규 학기 수업시수와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제32조(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의 철회)

-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수강과목의 철회는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이 때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소 12학점(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3조(출석일수)

- ① 출석일수가 전체의 5분의 4에 미달된 자는 해당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시간 출결기재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학업평가)

-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각 등급은 +(상), o(중), -(하)로 세분한다.
- ②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Ao	A-	B+	Bo	B-	C+	Co	C-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0

- ③ 성적등급 부여시 등급별 비율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리걸클리닉, 법조윤리 등 실무과목의 경우에는 합격(P)/불합격(N)/미완(I)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각 등급별 비율을 적용하여 인원을 산출할 때에는 상위등급부터 계산하며, 상위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성적등급 및 평점평균의 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7 ~ 100	4.3
Ao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o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o	74 ~ 76	2.0
C-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미만	0
P	합격	
N	불합격	

### 제35조(성적등급 등)

- ① 시험기간에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이 발생한 경우,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추가시험의 경우 A0등급(94점)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C+(2.3)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성적등급 I(미완)는 '실습과정 I'과 '실습과정 II' 과목 또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되 이 기간이 초과하여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F로 처리한다. 다만, I등급의 학점은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 ④ 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 제36조(인정학점)

- ①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본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학점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편입한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학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장에게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본 대학원장이 제5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⑦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청원자의 수강과목과 그 내용 및 취득한 평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⑧ 법학사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사취득학점인정제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37조(재수강)

- ① 기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학수번호가 같거나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대체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②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C+(2.3)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B+ 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단, 평가방법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는 B0이하인 경우에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 ④ 재수강으로 인한 학점의 취득은 이미 행한 성적경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8조(학사경고 및 유급제도)

- ① 학사경고의 대상자는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2.3이하인 자로 한다.
- ② 유급의 대상자는 매 학년말 평점평균이 2.3이하인 자로 한다.
- ③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된다. 다만, 실무과목의 합격(P) 학점은 유효로 한다.
- ④ 학년은 2개 학기로 하며,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학사경고 및 유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적산출 시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1. 학부 이수 학점
  2. 외국대학 이수 학점
  3. 외국어강의 이수 학점
  4. 계절학기 이수학점
  5. 타대학원강의 이수 학점

제39조(학년별 진급시험제도)

- ①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년도 말 학년별 진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진급시험 사정에 있어 학교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 ③ 진급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수업계획서)

다음 학기에 개설될 과목의 수업계획서는 수강신청 이전에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강의평가)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말에 즈음하여 학생들로부터 소정의 강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학적변동

제42조(휴학)

-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1.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
  - 2. 임신, 출산, 육아휴학
  - 3. 진급유예 휴학
- ④ 입학 후 최초 1년간은 휴학할 수 없다. 단,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⑤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4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45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학기가 경과한 자
- 3. 타교에 입학한 자
- 4.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5.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연한(수료에 이르기까지의 연한) 5년을 초과한 자
- 6.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계산은 실제 복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 7.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자



## 제8장 종합시험

### 제46조(시험일자)

졸업요건으로서 종합시험은 매 학년도 2회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종합시험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일시는 본 대학원장이 시험일 3주 전에 공고한다.

### 제47조(시험방법)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 제48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합격)

종합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50조(종합시험)

-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6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변호사시험법시행령」 별표1의 과목을 말한다)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제9장 수료 및 연구등록

### 제51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등록”은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이나 종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수료”는 본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제52조(연구등록금)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 시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금은 수료 후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3조(등록절차)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구등록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 제54조(신분 등)

- ① 연구등록을 한 자는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 ②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제55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 ① 본 대학원생이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수강신청 1학점 당 등록금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원생이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고 추가학점을 이수할 경우 수강신청 1학점 당 등록금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장 졸업

### 제56조(전문학위수여 결정)

전문학위 수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본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전문법학석사 학위기를 수여한다.

1. 실무기초과목(6학점)과 기본법학과목(29학점) 및 선택과목(61학점)을 포함한 96학점 이상의 취득(전과목 평균 성적 C+이상)
2. 종합시험 합격

### 제57조(특성화트랙 이수 인증서 수여)

본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트랙의 이수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 학위기와는 별도로 해당 트랙의 이수를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1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 제5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본 내규를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생지도센터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59조(징계)

- ① 학생이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본 내규를 비롯한 제반 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징계는 본 대학원장이 제청(본 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선행)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 처분은 본 대학원장이 행하고 무기정학·제적처분은 총장이 행한다.

### 제60조(장학금 지급기준)

- ①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지침」에 따른다.
- ② 장학생 선정은 학기단위로 하며,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61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에 해당자의 계좌로 입금 또는 학자금 상환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2조(장학생 선발절차)

- ① 장학생은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 ② 장학금은 이종지급 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장 보칙

### 제63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내규의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본 대학원 교수회의 심의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8조(학점포기) 삭제는 201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8조(학사경고 및 유급제도)의 개정 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4조(학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 제45조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2016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하여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수료한 자의 종합시험의 합격기한은 2016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 제3항의 진급유예휴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박사 학술학위 수여는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취득자(2019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1항의 석사 학위 수여는 2019학년도 전기 학위 취득자(2020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 학 위 기

석제 000 호

성 명 : 000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법학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법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000

위 증명에 의하여 전문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함.

경희대학교 총장 000

학위등록번호 : 법전원0000(석)000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제26조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